

# 大學設置基準令 圖書館條項의 再檢討

發表者：金 錫 淳 (建國大學校圖書館副館長)

現下 우리나라 圖書館領域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大學圖書館分野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重要한 部門의 全國의인 大會席上에서 不肖가 맨먼저 壇上에 서게 되는 것을 罪悚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論題는 圖書館成敗에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 “大學設置基準令 圖書館條項의 再檢討”란 問題올시다.

事實上 學問의으로 例外에 서 있는 이 사람이 曰可曰否할 處地가 아니지만 大會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貴重한 時間을 割愛받게 되었습니다.

圖書館施設基準에 對해서는 그동안 말쟁도 무던히 많았고 問題가 至極히 重要한 만큼 大學圖書館의 正常的 發展을 阻害한 要因을 파헤치고 適正한 構想을 내놓아야 할 것이지만 저 自身 너무나 力量이 不足하기 때문에 論調을 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기 어려울 줄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叡知의 總和로서 좋은 結論을 얻게 되기를 바랄뿐이 올시다. 이제부터 內容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끄집어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現行大學設置基準令은 1955年 8月 4日 大統領令 第1063號로 公布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年前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設置基準令 가운데 圖書館關係條項으로는 第3章 第11條1項에 大學에는 學生 1人에 對하여 30卷以上の 圖書를 備置하되 1學科當 5,000卷 以上이 되어야 한다. 但 初級大學과 2年制師範大學에 있어서는 各其 3分 2之로 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昨年 全國圖書館大會때에 서울大學校法科大學에 계시던 劉永珪先生께서 基準設置의 盲點에 對하여 銳利한 論評이 있었고 成均館大學校의 李春熙先生께서 同設置 基準令이 圖書의 量에 對해서만 言及하였을뿐 質의 問題에 있어서는 아무런 指針이 없으며 專門職에 對한 旬節도 전혀 없기 때문에 大學圖書館들을 營養失調로 만들었다고 指摘한바 있습니다. 여러 분께서도 同感이었을 줄 압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圖書館界에서 大學圖書館 分野가 가장 順調하게 發展한 것처럼 보이며 또 그것이 自發的이던 어떠한 壓力에 依하였던 跛行的으로나마 發展을 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 올시다.

여기에 問題點이 있습니다. 왜 正常的인 發展을 못하고 跛行的의나 即 걸름바리나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大學設置基準令의 盲點이 크게 作用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一部 大學當局者의 認識不足 乃至 沒常識이 겹쳐서 大學圖書館을 여러 形態의 畸型兒로 만들어 버렸다고 할 것 입니다.

設置基準令을 公布하던 當時의 形便을 잘 알수는 없지만 圖書館運營의 重要骨子를 조금도 考慮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當局者가 圖書館의 本質을 全然 몰랐거나 적어도 圖書館의 重要度에 對한 認識이 아주 不足하였든 탓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입니다.

지금은 文教當局의 認識이 많이 달라져서 圖協과의 提携가 增進되어서 얼마 前 專門家인 梨大의 張一世先生을 圖書館擔當 獎學委員으로 委屬하는 등 賢明한 施策을 採擇하므로 適切한 諮問이나 協助가 可能합니다만 그 當時에 좀더 이런 協助가 이루어져서 適正한 基準令을 公布했다 라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方向은 보다 健實하였을 것으로 推測되는 바입니다.

같은 基準令에도 圖書館以外의 다른 施設에 對하여는 比較的 具體的으로 規定되어 있습니다. 가령 基準令 第2章 教員配置事項 같은 것은 相當히 仔細하게 되어 있는데 比해서 圖書館條項은 다만 圖書數를 學生 한사람에 30卷씩 備置해라 이렇게 漠然히 적어 놓은데 不過합니다. 앞에서 大學當局 意見에서 日本의 例를 들었지만 比重이 우리는 너무 낮은 順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하나 大部分의 大學圖書館內容을 貧弱하게 만든 原因의 하나는 同基準令 附則에 基準到達을 爲한 擴充措置를 規定했기 때문에 圖書數의 增加만을 재촉하였을뿐 圖書館의 가장 重要한 施設들을 疏忽히 여긴데 있습니다.

基準令 第8條 第1號와 同條 第2號 (나) (다)項에 該當하는 各學科 即 8條 1號란 實驗, 實習等の 特別한 施設 設置를 必要로 하지 않는 學科와 第8條 第2號(나)項 體育, 藝術學科 (다)項 高, 數, 地理, 歷史 其他 이에 準하는 學科에 있어서는 基準設置 1年內에 各基準의 40%를 達成 해야하고

2年內에	〃	60%
3年內에	〃	80%
4年內에	〃	90%
5年內에	%	100%

即 이런 學科에 있어서는 1960년까지 基準에 到達하여야만 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또 8條2號 (가)項에 該當하는 學科 即 農, 工, 醫, 獸醫, 藥, 水産, 物理, 化學, 生物, 地質, 天文氣象, 家政學等の 學科에 있어서는

基準設置 1年以內에	30%
2年以內에	60%
3年以內에	70%
4年以內에	80%
5年以內에	90%
6年以內에	100%

即 1961년까지에는 基準에 到達하여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었습니다. 勿論 이것은 圖書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고 一般 校地, 建物, 教授의 數等 여러가지 基準의 全體의 達成을 意味하지만 例를 들어 5,000名의 學生이 있는 大學은 150,000卷의 圖書를 備置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履行을 못한 學校는 文教部가 學生數의 減縮, 學科의 統合, 學科의 廢摺 措置를 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다음해진 것은 學校經營者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藏書가 이 數字에 到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였고 따라서 숫자를 채우는 운동이 猛烈하게 展開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附則에 關한 件이 1960年 7月 19日 國務院令 第33號로서 改正公布되어 多少의 變更를 가져 왔습니다.

基準令 第8條1號와 同條第2號 (나)(다)에 該當하는 各學科에 있어서는

1960년까지 各基準의	85% 以上
1961年	90% "
1962年	95% "
1963年	100%

即 아까 말씀드린 實驗, 實習이 必要치 않은 學科는 今年까지 基準數에 到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第8條 第2號(가)項에 該當하는 學科 即 實驗, 實習을 要하는 學科에 있어서는

1960년까지 各基準의	75%
1961年	80%
1962年	85%
1963年	90%
1994年	95%
1965年	100%

가 達成되어야 합니다.

即 1965년까지 基準에 完全히 到達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는 것입니다.

以上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現在 適用받고 있는 大學設置基準令 圖書館條項과 適用을 받는다고 解釋되는 그 關係條文의 概略입니다.

이 基準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定員 減縮, 學科統合, 學生募集의 停止, 學校의 廢頓를 文教部長官이 命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大學當局者들은 이 基準에 到達하려는 努力이 傾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圖書館에 對한 條項은

目標達成에 別로 어렵지 않은 方法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即 圖書館內部施設이나 人的事項의 言及이 全然 없으므로 圖書의 數만 채우면 基準令에 거뜰하게 到達이 된다는 것입니다.

極端的인 例를 들어 어떤 大學에 圖書 25,000卷이 不足할때 單돈 百萬원으로 40원짜리 冊 25,000卷을 사다가 창고에라도 넣어 두면 되는 것입니다.

實際로 過去에 이 程度로 賣買된 것이 事實이었습니다. 貨幣改革前만 해도 舊貨로 200환이나 300환만 내면 內容은 別問題로 形態가 어엿한 圖書를 살 수 있었읍니다.

大學圖書館에 備置할 圖書는 質的으로 어느 水準에 가야만 할 것이고 圖書를 利用할 수 있도록 整理하는 業務가 圖書館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일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基準에 整理나 施設에 對하여 一言半句도 言及이 없기 때문에 샀거나 어디에서 얻어 왔거나 圖書의 量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經營者들의 非常한 머리 속에 있음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해 동안에 大學圖書館은 제멋대로 千態萬像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중에 더러는 大學經營者가 올바른 認識을 가지고 正常的으로 發展시킨 圖書館도 있고 或은 建物이나 커다랗게 지어 놓고 數字만을 채우기에 汲汲한 圖書館도 있고, 도대체 돈이 없으니 이도, 저도 못하고 그저 垂手傍觀만 하는 圖書館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訓練받은 司書가 하나도 없는 圖書館이 事實上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읍니다. 이제 가지고는 大學圖書館이 軌道에 오를 리 없읍니다. 여

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나라의 圖書館發展에 關心을 가진 여러분 圖書館人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십니까만 圖書館 從事者인 司書의 待遇는 一個書記와 같은 程度로 다루어지고 大學當局者는 專門職의 必要性조차도 認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法도 없으니 정말 暗澹한 處地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圖書館職員들이 希望과 意慾的이 아니라 失望과 憂鬱속에서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는 동안 圖書館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數年來 圖書館을 經營者 自身들의 생각대로 해보았지만 圖書館運營이나 圖書整理는 訓練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하겠다는 程度의 認識이 되어 가고 있음은 希望의 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圖書館人들의 結束이 보다 굳세어져서 어떤 問題에 對해 衆智를 모을 수 있을 程度로 組織이 成長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래서 昨今 圖書館界에는 圖書館法 問題와 아울러 施設基準令의 改正論이 크게 抬頭되어 새로운 脚光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轉機는 昨年 겨울에 이루어 졌습니다.

即 文教部가 各級學校基準令이란 龐大한 것을 閣令으로 作成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圖書館施設에 對한 項目이 比較的 詳細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不肖가 말씀드리려는 核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施設基準令案에 對하여 日前 제가 文教部에 問議하였더니 目下 再檢討中에 있다는 言明이 있습니다. 이 案은 우리 圖協과의 提携가 이루어졌고 우리 學界에

서 中鎖이며 圖書館行政에 造詣가 깊은 白麟, 明在暉 두 先生께서 深思熟考 끝에 다음과 같은 案을 作成하여 文教部에 建議한 것이 그대로 받아 드러졌다고 합니다.

이 案에 對해서 不肖가 分析檢討하기에 정말 거북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課題이고 여러분께서도 充分히 納得이 가야만 원만한 것이 되겠기 때문에 어쨌든지 생트집을 좀 잡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基準案의 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基準案에는 大學을 4種으로 區分해서 初大(專敎), 單科大, 大學, 大學院 包含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施設面에서 一般閱覽室은 在籍學生數의 25%以上 收容할 座席數를 確保해야 하며 閱覽臺의 面積은 一人當 4.5坪方尺以上 即 열람臺 3尺×6尺 짜리를 4인이 使用하는 것을 基準으로 하였습니다. 椅子는 個人用으로하고 등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參考閱覽室은 開架制로 하고 一般的 및 特殊的 質問에 解答을 提供할 수 있도록 充分히 均衡이 잡힌 藏書를 確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參考室 閱覽席은 初大 20席以上, 單大 20席以上, 大學 30席以上, 大學院 包含校 60席以上이며 閱覽席의 面積과 冊床, 椅子는 一般閱覽室과 同一한 規格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參考室에는 司書用冊床, 椅子, 各各式과 버더칼과 일직이 若干 있어야 하며 書架는 調節式으로서 나비 10吋 길이 3尺 이고 1尺當 6卷式 쏘는 것을 基準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셋째로 藏書 및 書庫에 있어서 初大와 單大는 在籍學生數 1,000名까지 最低 30,000卷이 있어야 하고 200名이 增加함에 따라서 3,000卷式 增加해야 하며 大學, 大學院 包含學校는 在籍數 1,000名까지 最低 50,000卷이 있어야 하고 200名을 增加함에 따라 5,000卷式 增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現行 基準令과 根本的으로 다른 것은 이 圖書들은 分類, 編目이 되고 館外貸出準備가 完全해야 한다는 規定이 있는 點입니다.

또 隨時로 無用圖書는 廢棄하고 新刊을 隨時 追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書庫內에는 一人用冊床 2尺×3尺 짜리를 適宜配置하여 書庫內에서 研究하는 便宜를 提供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書架는 冊 100卷當 높이 7尺 넓이 3尺 선반 幅 8吋의 調節式 書架 한 間이 配當되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다음 넷째로 定期刊行物室인데 初級大에 있어서는 雜誌 70種以上 新聞 20種以上 目錄函 若干 閱覽席 20席程度가 되어야 하고 單科大는 雜誌가 100種以上 新聞 20種以上 目錄函 若干 閱覽席 20席 程度 이어야 하며 大學에서는 雜誌가 100種以上 新聞 20種 目錄函 若干 閱覽席 20席程度 大學院이 包含되면 雜誌 200種以上 新聞 50種以上 閱覽席 30席以上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定期刊行物室에도 書架나 司書用冊床, 椅子가 있어야 함은 勿論입니다.

雜誌架는 雜誌 20種마다 7尺×3尺 짜리 一個 꼴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定期刊行物室은 參考閱覽室에 附屬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貸出施設에 있어서는 로비가 마련 되어서 여기에 카아드 函을 놓고 混雜이 없을 程度의 餘裕 있는 넓이가 必要하며 目錄은 3''×5'' 標準 카—드用으로 藏書 100卷에 設함 1個式이 있어야 하며 貸出臺, 북추력, 司書冊床, 椅子가 備置되어야 합니다.

事務室은 職員 1人當 125坪方尺의 넓이여야 하며 事務用 카—드函은 藏書 500卷에 設함 1個꼴이 있어야 합니다. 事務室에는 水道, 洗面臺, 冊床, 椅子, 書架, 目錄函, 북추력, 國文, 英文, 打字機가 있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學生 5,000名이 있는 大學院을 包含한 大學圖書館을 例로들면 整理된 藏書 150,000卷이 있어야하고 雜誌 200種 新聞 50種, 一般閱覽室座席 1,250席에 參考室 60席, 定期刊行物室 30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드函은 閱覽用이 15설함짜리 100臺 設함으로 1,500個가 있어야 하고 事務用이 30臺 設함 450個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施設도 이에 準하여 備置되어야 할 것은 勿論입니다. 그러므로 5,000名의 學生을 가진 大學圖書館의 規模는 大端히 커야하며 人員도 相當數가 必要할 것입니다. 事實上 이 基準에 完全到達한 大學圖書館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以上 말씀드린 것이 지금 文教部에서 再檢討中인 圖書館施設基準案의 全貌라 하겠읍니다.

이 案은 近日 公布를 볼것이 豫想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至大한 關心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가로 놓인 問題는 大學圖書館施

設基準은 이것으로 좋으나 하는 點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眞摯한 關心을 가지시고 慎重檢討하시기 바라며 여러분께서 더 좋은 構想이 있으시면 高見을 말씀해 주셔서 이를 文教部 當局에 다시 反映시키므로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보다 正常的이고 劃期的인 發展의 土臺를 만드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案이 公布가 된 것이라면 意義가 없지만 아직 公布되지 않았기 때문에 萬一 더 添加하거나 改善할 點이 있다면 再建議가 可能할 것 같습니다.

現行 基準令은 너무나 簡略一條이기 때문에 論議의 餘地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文教部에서 檢討中인 基準令案에 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實際的일 줄 압니다.

文教部 基準案을 再檢討하기 前에 參考로 잠깐 美國에 있어서의 大學圖書館基準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道赫월보 今年 3月號에 李炳穆氏가 大學및 研究圖書館協會基準委員會에서 作成한 것을 翻譯掲載하였는데 여러분께서 다 읽었을 줄 압니다. 여기에는 施設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라 大學圖書館의 機能, 組織, 豫算, 職員, 藏書, 建物, 奉任에 이르기까지 大學圖書館基準에 對하여 綜合的인 原則과 方向을 提示하였습니다. 例를 들면 館長의 職務, 專門職員의 比率 등이 規定되어 있고 藏書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圖書館이라 할지라도 50,000卷 以下의 藏書로서는 教育事業의 效果的인 支援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藏書는 學生數 600名까지는 50,000卷 200名 增加할 때마다 10,000卷 增加를 基準으로 하였습니다.

座席數는 學生數의  $\frac{1}{3}$ 을 收容할 수 있

어야 하고 建物等은 20年以上 앞을 내다 본 發展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고 規定했습니다.

視聽覺에 對한 資料도 大學圖書館에서 取扱하기로 되어 있으며 圖書館 相互奉仕를 通하여 共同資料의 重複을 避할 수 있다는 것 등이 考慮되고 있습니다. 施設에 對하여 閱覽者 1人當 2呎×3呎 짜리 閱覽臺 面積이 기준으로 推薦되고 있으나 그 밖의 것들은 品名이나 그 方向만 提示하고 數量에 對해서는 言及이 되지 않았습니다. 以上이 美國에 있어서의 大學圖書館基準인데 우리나라의 境遇는 文教部案이 施設 即 圖書나 備品等에 限定되어 있으므로 本質的으로 美國의 이 圖書館基準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文教部 基準案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美國에 있어서의 基準은 自律的인 獨立的인 것이므로 모든 것이 網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境遇는 人的事項이나 豫算問題等 그밖에 여러가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獨立的인 圖書館基準이 아니기 때문에 施設에만 局限된 것이지만 大端히 훌륭한 것입니다. 基準을 表示함에 있어서 이는 基準에 比하여 좀 模糊한 模糊라던 語彙가 있지만 用語中 若干이란 語句라던지 程度란 語句라던지 施設 品種만 羅列하고 數字의 表示가 없다는 點 등은 몇개 以上이라던지 어떻게 좀 具體的으로 表示할 必要가 있을 것 같이 느껴 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實情으로는 어떤 理想의 方向만 提示해 가지고는 그대로 實施하지 않으려는 傾向이 없지 않습니다. 基準案의 他學科의 例로 보면 工具等에도 “12인치 몽키스파나 2個”라던지 “못떼기 마치 1個”라던지 이렇게 仔細히 記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圖書館施設에 있어서도 數量 등을 明確하게 表示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美國의 境遇 처럼 伸縮性 있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 檢討의 餘地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지 다른 基準과 步調를 맞추기 위해서는 數量 등을 明確히 表示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또 가장 重要的 몇가지 再檢討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되는 點에 對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閱覽座席에 있어서 在學生數의 25% 이상은 우리나라 實情으로는 좀 많지 않은가 합니다.

美國 같은데서는 在學生 30% 이상의 座席을 基準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日本文獻 등에 依하면 大學圖書館의 適正規模로서 閱覽座席數는 全學生數의 10乃至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나라의 것을 그대로 따르자는 말은 아닙니다만 施設基準은 너무 낮아도 못쓰지만 實情에 맞도록 해야할 줄 압니다.

둘째 藏書의 質에 對해서 어떤 標準이 必要치 않을까 합니다. 大學圖書館의 藏書로서 적당한 圖書란 막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良識을 가지고 判斷한다면 自他가 共認할 만한 適不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適當한 標準을 두어야지 또 休紙 購入運動이 되꾸리 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셋째 閱覽用 카-드함이 藏書 100책에 설함 하나는 事實 問題에 있어서 너무 카-드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大學에는 複本이 相當數에 達하며 冊數에 比하여 種數로서는 퍼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몇권이 아니고 몇種이라던 納得이

가지만 基準案에는 一卷으로 表示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 基準案에는 視聽覺室이 規定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의 趨勢가 大學의 視聽覺室은 圖書館領域에서 獨立해 빠져 나가는 實情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圖書館에서 取扱하는 것이 適切하지 않을까 하는 點입니다. 그리고 이런 問題들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立案者이신 明在暉先生, 白麟先生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說明을 듣고 좋은 方案을 摸索하시기 바랍니다. 圖書館運營에 있어서 司書를 비롯한 人的 事項이 大端히 重要的 要件이지만 亦是 言及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施設에 넣기가 困難한 問題이므로 規定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問題는 將次 圖書館法이 制定되면 여기서 다루어질 것으로 生覺합니다.

大學圖書館의 正常的인 發展은 圖書館法, 施設基準의 適正 文教當局의 圖書館行政強化 大學經營者, 重要幹部의 바른 認識이라는 要件이 具備되어야만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以上 施設基準令 圖書館條項의 大綱과 若干 私見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結論의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圖書館施設基準令이 欠점을 것 없이 훌륭할지라도 어떻게 實施의 萬全을 期할 수 있는냐는 것이 가장 큰 問題입니다.

文教部가 아무리 理想的인 施設基準을 定할지라도 專門家가 아니고는 建物設備, 閱覽施設, 貸出制度, 整理業務, 參考業務 各種備品の 適否 등을 알 길이 없으므로 問題自體를 專門家들의 손에 맡겨버리는 即 委任해버리는 英斷이 要請되는 바입니다.

